

2020년 체육시설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5. 11. ~ 5. 14. / 4일간
- 감사범위 : 2017. 6. 3. ~ 감사일 현재
- 감사인원 : 감사담당주사 등 4명

II 감사결과

1] 체육분야

1) 체육시설의 위법부당 관리·운영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감경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용료 반환 시 불가피한 사항 또는 군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위약금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이용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사용료를 받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없이 사용허가서 교부를 하지 않고 구두로 사용승인하고,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았음.
- 또한, 소장 전결 업무를 공문으로 접수된 사용허가 신청 외에는 담당자가 임의로 사용허가 처리하였으며 &&면 00체육시설에 대하여 &&면에 업무를 위임하고도 관리·운영실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허가대장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음.
- 민원발생 및 편의를 이유로 시설 이용 후 사용자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하여 사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위약

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을 무색하게 하였으며,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 감경 신청서를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임의로 감경 처리, &&면 00체육회관은 2018. 10. 31.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

- ##체육센터는 사용료를 감경하면서 감경신청서를 제출받아 감경된 금액을 수납하여야 함에도 담당직원의 확인만으로 사용료를 감경 처리

2)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 소홀

- 「지방재정법」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르면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한 경우 1회 확인 시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2회 확인 시 지원중단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하여 대상자를 선정처리하였고, 사업연도 내 누적 2회 미결제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별도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체육시설업 신고수리업무 처리소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시 첨부서류 누락 12건이 있음에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신고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수리 23건, 성범죄경력 조회 없이 신고수리(2건)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례에 정한 금액과 달리 수수료를 징수하여 총 7건, **,***원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

2] 회계분야

1) %%%%리그 예산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이 가능함
- %%%%리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면서 실제적인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의 절차를 거치는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성격으로 집행함으로써 행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출납부 정리 소홀

-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장부에는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스포츠시설 대관료를 수납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수납된 대관료를 즉시 출납부에 기재하지 않고 수일 또는 최대 6개월분의 수입액을 하나의 항목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음

3) 관외출장여비 집행기준 미준수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며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관외출장 여비를 집행하면서 자가용 동승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하였고 출장에 대한 증거서류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여 여비 집행기준을 미준수

3] 건설분야

1)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확인소홀

- 건설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현장에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배출시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최종 처리업체 확인서 등을 10톤 이상인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확인, 중량계근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상설무대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여 총 **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2) 건설공사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확인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공사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시설 증축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 전문기관과의 기술지도 협약체결 여부를 미확인 한 사실이 있으며 「☆☆☆☆☆ ◇◇◇장 조명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전문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산업안전 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천원을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음.

4] 시설분야

1) 공유재산 실태조사업무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거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년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통보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재산관리관별로 소관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음
- 가조면 ★★리 산**번지 등 10개의 토지와 국민체육센터 등 건물 11건에 대해 대장정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미정비하였으며, 연도별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공유재산 소유권 보전조치 미이행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취득사유가 발생한 ▲▲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건축물을 등기 조치하지 않았고, 취득사유가 발생한 ▼▼면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취득일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 미작성, 건축물 등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권리 보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국민체육센터 보안관리 미흡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에 따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 근무를 하게 하거나 무인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등 보안장비 설치’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 확인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는 22:00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택당직 시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는 경비원이 상주한다는 이유로 감사기간 동안 무인경비시스템을 한차례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5] 기타분야

1) 이륜자동차 미등록 및 책임보험 미가입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2018년 스포츠파크 공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 이륜차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사용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